

12. 都市公園法施行令 및 施行規則中 改正令(案)

立法豫告 1990. 5. 22

1. 개정배경

가. 시행령

도시계획구역내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결정된 도시공원내의 점용허가대상을 확대하고, 녹지의 이용 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나. 시행규칙

도시공원내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의 종류를 다양화하여 도시공원의 효율적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행령

- 1) 공원관리청인 시장·군수의 허가를 득하여 도시공원내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점용허가대상을 확대하여
·공동구, 선착장, 등대, 지하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을 추가하고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의 개축, 재축과

대수선을 허용하며, 이들중 종교용시설은 새로운 대지조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시설의 연면적 범위내에서 증축도 허용함.

- 2) 녹지내에서 지하에만 설치가 가능하였던 도로중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지상에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나. 시행규칙

- 1) 도시공원내 설치가 가능한 공원시설 중 운동시설의 종류를 확대하여 게이트볼장, 요트장, 경륜장, 검도장, 볼링장, 간이골프장(5홀이하의 규모에 한함), 배드민턴장도 공원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음.
- 2) 간이골프장은 그 시설의 성격상 30만제곱미터이상의 근린공원 및 100만제곱미터이상의 도시자연공원에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3. 의견제출

이 영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0년6월11일까지 다음 사

항을 기재한 의견서(16절지를 세워서 작성)를 건설부장관(참조:도시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상식코너

민영화

(privatization)

민영화(privatization)란 공공활동 또는 재산을 민간부문으로의 전환을 말한다. 그러나 민영화의 廣義의 의미로는 공공서비스 공급의 민간부문 이행에 한정하지 않고 재정부담의 축소와 정부규제의 완화까지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사바스(E.S. Savas)의 공공서비스(供給類型中 民營化)의 대상유형은 민간과의 契約, 허가(franchise), 補助金지급, 證書(vouchers) 등을 들 수 있다.

공공부문

(public sector)

공공부문이란 오늘날의 혼합경제(mixed economy)에서 민간부문(private sector)과 함께 자원의 배분기능을 담당하는 기본적인 경제구조의 하나를 말한다. 즉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경제주체로 하는 개별 경제활동 영역을 공공부문이라고 부른다. 공공부문의 경제활동으로는 사회간접자본의 개발과 운영, 공적 용지의 개발, 공업부문의 자원시설등 민간이 하기 힘든 부분을 담당한다.